

의안번호	제 31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월 일 (제 277 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용식 의원외 7인
발의연월일	2009년 1월 14일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용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
----------	-----

발의연월일 : 2009. 1.

발 의 자 : 오용식·이연구·김범기  
김인수·김화수·이규완·  
이기동·한창동(8인)

## 1. 제안이유

- 「건축법」 개정(2008. 3. 21, 법률 제8974호)과 건축법시행령 개정(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으로 법률조문 개정과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구성(안 제4조)

- 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과 교통 영향 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

### 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조문 개정(안 제23조, 제25조)

- 건축법개정으로 법률조문 개정

### 다. 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 조문 개정

(안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9조, 제22조)

- “인” 을 “명”으로 개정

### 라. 직제개편으로 조문 개정(안 제8조, 제22조)

- 2008. 7월 직제개편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명칭 변경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 첨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76조의2”를 “법 제88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2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

자인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법 제7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7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을 “「건축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6”를 “「건축법」 제93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4”를 “「건축법」 제95조”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3”을 “「건축법」 제96조”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건축법」 제76조의5”을 “「건축법」 제96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설치) 법 제42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구성) ①-----1인 ----- ----- 10인이상 20인 이내 ----- ----- 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lt;신설&gt; ④ (생략)</p>	<p>제4조(구성) ①-----1명----- -----10명 이상 30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건축팀장----- -----건축팀-----</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1명----- ②-----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p>
<p>제11조(소위원회) ①----- ----- 5인 이상 10인 ----- -----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p>	<p>제11조(소위원회) ①----- ----- 5명 이상 10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제17조(설치) <u>법 제76조의2</u> ----- ----- -----	제17조(설치) <u>법 제88조</u> ----- ----- -----
제19조(구성) ① -- <u>1인을 포함한 15인</u> ----- ② (생략) ③ (생략)	제19조(구성) ① -- <u>1명을 포함한 15명</u>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 ----- ----- 1인 ----- ② ----- <u>건축팀장</u> ----- -----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 ----- ----- 1명 ----- ②----- <u>건축디자인과장</u> ----- -----
제23조(조정외 신청 및 회의) ① ----- ----- ----- <u>법 제76조의 6 제항</u> <u>의 규정에 의한</u> ----- -----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23조(조정외 신청 및 회의) ①----- ----- <u>법 제92조 제항에 따</u> <u>른</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비용부담) ① (생략) ② <u>법 제76조의 16제 3항의 규정에 의</u> <u>하여</u> ----- ----- 1. ~ 3. (생략) ③----- <u>법 제76조의 16제 3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 ----- ----- <u>법 제76조의 10제 1항의 규정에</u> <u>의하여</u> ----- ----- <u>법 제7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u> ----- -----	제25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02조제2항에</u> <u>따라</u> ----- ----- ----- <u>법 제96조제1항에 따라</u> ----- ----- ----- <u>법 제93조에 따라</u> ----- ----- -----

**관련법령 발취**

1) 건축법 [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8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조정) 및 재정(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③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2조(조정등의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

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2조 (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

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제5조 (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경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전문개정 2008.10.29]

**경관법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18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

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제1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